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7. 7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



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
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송달 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 사유
김○연	1988.03.27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	○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이사불명

4. 공고기간 : 2023. 7. 7. ~ 2023. 7. 2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안양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전성재(☎ 031-463-382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